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19 호

2003 년 6 월 7 일 토 요 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3호(체비지매각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4호(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공고) --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8호(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9호(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공람공고)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0호(인천광역시남동구열림습터관리운영규정(안)입법예고공고) -----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1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2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 36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3-6호(검사시약및재료구입전자수의입찰공고) ----- 4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3호

체비지매각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1. 매각재산

○ 총 매각현황 : 도림지구(2필지/ 298.8㎡)

연번	소재지 (BL-LT)	면 적 (㎡)	예정가액	지장물유무	비 고
1	BL19-2	170.0	160,352,000	유	
2	BL30-7	128.8	98,396,000	유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매번호에 의한 필지별 매각)

3. 입찰등록접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공고일로부터 2003. 6. 13.(금) 10:00까지

나. 장 소 : 남동구청 3층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4.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3. 6. 13(금) 10:30

나. 장 소 : 남동구청 4층 제2상황실

5. 낙찰자 결정방법

우리구의 물건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공매 물건별로 입찰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은행 업무마감시간)까지 수도권지역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남동구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남동구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현금에 치증)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때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때

마.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8.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우리구가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귀속조치됩니다.

다. 계약자의 명의는 낙찰자로 합니다.

9.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1)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토지대금의 4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2) 위기간 경과 시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도금, 잔금납부기일을 경과한 잔일은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의 일반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까지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당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구가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시 구비서류

가.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나. 입찰보증금납부확인서(우리구 발급 소정양식)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마. 인감도장(본인 및 위임자)

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대리인 접수시)

2003. 6.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입찰 유 의 서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전까지 입찰금액의 10%이상 입찰보증금을 수도권 지역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우리구 소정양식으로 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등록자 본인이며 응찰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미리 제출한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서는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에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구매번호, 입찰일자, 주소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 날인하고,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입찰참가신청용)원본과 함께 입찰서 봉투에 넣고 봉인 후, 구매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입찰서에 날인한 인장으로 봉인하여 접수한다.
4. 입찰자의 주소, 성명 등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5. 등록접수된 입찰서류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 교환, 변경할 수 없음.
6. 입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시에는 입찰서에 날인한 동일 인장으로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없음.
7. 입찰등록 및 개찰을 방해하거나,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8. 입찰의 무효 및 입찰
 - 가. 위 1-7항의 중요 위반사항이나 기타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나.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입찰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때
 - 다. 입찰서의 구매번호, 입찰금액, 주소, 성명 등의 주요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 등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날인누락, 불필요한 표시등으로 입찰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을 때
 - 라.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할 때
 - 마.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 바. 계약사무처리규칙의 무효사유 및 기타 유찰로 인정될 때

9. 입찰보증금 예치 및 환불방법

- 가. 입찰보증금을 예치할 때 본인의 예금통장 온라인 계좌번호를 예치금 납부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함.
- 만약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예치할 때 현장에서 신규로 개설할 수 있음.
 - 총 입찰보증금과 예금잔고를 합산하여 예금과목의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는 예금계좌번호는 기재할 수 없음.(예 : 자유저축)
-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발급 받은 입찰보증금 예치확인서를 입찰등록시 입찰서류와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에 사용하지 않은 예치확인서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 입찰결과 유찰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반환은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송금요구)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당초 예치할 때 기재한 본인의 온라인계좌에 입금 조치되므로 한미은행 계좌인 경우는 입찰일로부터 2일 후, 다른 은행 계좌인 경우는 4일 이후 본 지점에서 인출할 수 있음.

10. 낙찰자의 결정방법

- 가. 공매물건별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구 예정가격이상의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나. 동일 필지에 동일 금액의 최고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다. 1필지 1인 입찰시 우리구 예정가격이상 입찰시 낙찰자로 함.

11. 입찰시 제출서류

- 가.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나. 입찰보증금납부확인서(우리구 발급 소정양식) 1부.
- 다.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마. 인감도장(본인 및 위임자)
- 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2) 453-266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 매 계 약 서

수입인지

대장 No.

1. 재산의 표시

환지예정지 : 도립지구 번지 호 체비지예정면적 : m²환지확정지 : 구 동 번지 호 면적 : m²

2. 매 매 대 금 : 일금 원정(W)

3.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W)

4. 위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칭하며, 갑, 을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 약 일 자 : 서기 년 월 일

매도인(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①

매수인(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성 명 : ①

주민등록번호 :

계 약 약 정 조 항

제1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제2조 본 계약 재산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변경.

단, 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매도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 중도금 ₩ 원은 년 월 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2. 잔금 ₩ 원은 년 월 일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3. 위 기간 경과시 납부기간 경과후 6개월(년 월 일)까지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잔금은 구금고(한미은행)의 일반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1. 갑은 본 계약약정 위 제2조 내지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을에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약정 위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를 규정기간내에 갑에게 해약요청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5조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 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하등 이의를 할 수 없다.

제6조 갑은 을의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1.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을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때의 정산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3.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구금고(한미은행)의 일반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징수한다.

제8조 위 본 계약약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특약)조건 유의서

1. 계약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못함.
가.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저당권, 제한물권의 설정 등
나.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2. 대금완납 후 당해 토지의 관리책임은 매수자가 지며,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우리구는 책임을 지지 않음.
3. 공사기간 연장이나 지장물보상 미흡으로 인하여 토지활용이 지연되더라도 매수자는 이에 따른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4. 지분매각한 토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며 우리구에서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5.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때의 정산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에 의하며,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매수자는 정산하여야 하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6.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을때의 정산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7.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구금고(남동구청 한미은행)의 일반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8.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함.
9. 매각토지가 환지처분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공채 또는 도시철도공채를 일정액으로 매입한다.
10. 계약시 제출서류
가. 매매계약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인감도장
마.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대리인 계약서) 1부
바. 정부 수입인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4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전반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위탁공고 및 위탁신청의 방법(규칙안 제3조, 제4조)
-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지정(규칙안 제5조)
-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규칙안 제6조, 제7조)
-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6월 22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38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지시설을 변경 할 수 있다.

1. 집회실 또는 강당
2. 경로식당
3. 물리치료실
4. 노인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교실
5. 이·미용실
6. 체력단련실
7. 상담실
8. 주간보호실
9. 사무실
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제3조(위탁공고)조례 제4조에 의한 위탁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지방일간지, 구보, 구 홈페이지 또는 구 지정 게시판등에 공고한다.

제4조(위탁신청)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4. 사회복지 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 정관 및 등기부 등본
7.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 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제5조(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위탁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기타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이 의거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관 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등) 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 일내에 구청장과 위탁운영 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체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을 작성, 위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회관을 운영 및 관리하되 위탁신청 당시의 법인 또는 단체와는 구별하여 회관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운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이 없이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3. 구청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

4. 기타 위탁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해지예정 30일전에 위탁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연장결정은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협약만료 2개월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남동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인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회관 운영 신청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노인계, 학계, 종교계, 의료계, 여성계, 기타 노인복지관계전문가

2. 기타 유관기관 단체 인사

②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과장, 서기는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⑤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두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호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회 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2
- 회 관 규 모 :
- 위 탁 운 영 :
- 신 청 기 간 : 년 월 일
- 접 수 장 소 : 남동구청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현장설명 실시 및 장소

4. 참가자 제출서류

- 가. 위탁신청서(본 회관 소정양식)
- 나. 사업계획서 1부.
- 다.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 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마.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 바.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사.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453-2384)
-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위 탁 신 청 서

1. 건물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2. 신청자 기재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 인 형 태	
현소재지			
재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위탁희망 관리기간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1부.
- 나.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 마.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 가. 입주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 나. 노인복지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대표자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수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협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기간까지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②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2

건 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위 표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남동구청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기간) ① “갑”은 위 표시 노인복지회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복지회관의 향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위탁관리보조) ①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② “을”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매분기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내용)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 제3조(관장업무)”에서 정한 사업으로 “을”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4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을”은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탁권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기타 노인복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건물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을”이 건물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지도감독) “갑”은 노인복지회관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사용명칭) “을”은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대내외적 명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갑”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해지조건)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발생 때
2. “갑”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때
3. “을”이 계약내용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제8조(해지통보) “갑”“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과 운영권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제정등으로 조정, 변경, 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0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 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2조(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길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을”(수탁자) :

【별지 제5호서식】

위탁협약해지통지서

수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성명
 주 소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①

【별지 제6호서식】

해 지 신 청 서				
수탁자 기재 사항	위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입주년월일	
해지신청자			퇴거년월일	
해지사유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 예정 2월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들에 대한 위·해촉 권한을 구청장에서 실제적 관리운영자이며 단장인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하고자함.

3. 주요내용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3년 6월 23일까지 의견서(A4 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 참조:문화홍보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453-2104) 또는 FAX(453-210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일 : 2003년 월 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사유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 및 단원의 위·해촉 권한을 구청장에서 합창단장인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함.

☐ 주요개정골자

○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해촉 권한 조정

(안 제6조 및 제7조)

☐ 본문 : “ 별첨참조 ”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제1항 내지 제3항중 “구청장” 을 “부구청장” 으로 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본문중 “구청장” 을 “부구청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반전형으로 <u>구청장</u>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u>구청장</u>이 위촉한다. 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u>구청장</u>이 위촉한다. ④ .⑤ <생략>	제6조(단원의 위촉) ① ----- ----- ---- <u>부구청장</u> ---- ② ----- ----- ---- <u>부구청장</u> ---- ③ ----- <u>부구청장</u>---- ④.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u>구청장</u>은 단원의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2. 3 <생략>	제7조(단원의 해촉) ----- ---- <u>부구청장</u> ---- ----- 1. 2. 3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7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113호로 결정된 도림구역지구단위계획 일부에 대하여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6.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명 :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
 - 가.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	합 계	155,990	-	155,990	100.0
거	1종 일반주거지역	91,256	감) 91,256	-	-
지	2종 일반주거지역	23,998	증) 91,256	115,254	73.9
역	3종 일반주거지역	40,736	-	40,736	26.1

나. 건축물 밀도 및 층수 변경

- 건폐율 : 당초 50%이하를 60%이하로(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시설 허용용지)
- 용적률 : 당초 150%이하를 200%이하로(단독주택 용지)
당초 230%이하를 250%이하로(공동건축에 한함)
- 층수제한 : 당초 3층이하를 4층이하로(단독주택용지에 한함)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기존 건축물용도 및 종교집회장 허용(단독주택지에 한함)

라. 도로시설 변경 : 굴데삭 구간 삭제 3개소

대로3-25호선변 가각전제 변경 4개소

도로노선 축소 1개소

도로선형변경 1개소

도로 신설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신설)

마. 관련도서 : 생략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 - 2692)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

2. 입법예고기간 : 2003. 6. 7 ~ 6. 26(20일간)

3.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로 신축한 시청앞 열린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신축건축물을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 점포로 구분
(안 제3조)
- 열린쉼터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위탁료 산정시 공공시설 운영비를 감안토록 함으로써 적정 관리위탁료 산정토록함
(안 제4조)
- 관리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규정하되 필요시 1년단위로 연장토록함
(안 제5안)

4. 의견진술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 6.2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전화(453-239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 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정사유

-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로 신축한 시청앞 열린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주요골자

- 신축건축물을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 점포로 구분(안 제3조)
- 열린쉼터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위탁료 산정시 공공시설 운영비를 감안토록 함으로써 적정 관리위탁료 산정토록 함(안 제4조)
- 관리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규정하되 필요시 1년단위로 연장토록 함(안 제5안)

□ 본문 : “별첨”

□ 참고사항

- 청소67432-1558(2003.4.10)호 미래광장커뮤니티프라자 관리운영계획(안)
- 청소67432-1760(2003.4.22)호 미래광장커뮤니티프라자 관리운영변경 계획(안)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이하 “열린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법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린쉼터”라 함은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광장에 공익(행정)목적과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공공시설과 점포로 구분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조경시설 등 열린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임대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4. “임대”라 함은 점포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위탁”이라 함은 공공시설 관리 및 점포 임대를 말한다.
6. “관리운영비”라 함은 공중화장실 운영비,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열린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린컴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2.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3년 이상 한 자 또는 법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수탁자는 열린컴터 관리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위탁료 산정 시 감안한다.

④관리수탁자는 열린컴터에 대하여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린컴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공고)관리수탁자 모집은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한다.

제6조(관리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관리수탁자는 열린컴터 관리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관리수탁자는 열린컴터에 대하여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구청장은 열린컴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차한 경우
2. 관리위탁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리수탁자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기타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이전에 위탁관리 중인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로 본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1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 및 인천광역시 동부 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6. 5 ~ 2003. 7. 4(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7. 4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6.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6.00	최병걸	남동구 논현동 산71	
			가옥	목조스레트	22.75			
			창고	목조스레트	7.50			
			가추	목조스레트	11.90			
			가추	목조썬라이트	7.50			
2	논현동	411-1	가옥	목조	25.36	조수일	남동구 논현동 411-1	
			가옥	철재콘테이너	18.00			
			보일러실	철재조립식	3.00			
			화장실	목조	2.25			
3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3.55	모수성	남동구 논현동 산71	
			화장실	브릭스레트	1.08			
			보일러실	브릭스레트	2.00			
			가추	목조스레트	19.50			
			가추 및 광	목조	14.00			
4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59.94	김민	남동구 논현동 산71	
			현관	목조썬라이트	9.12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간석동	360-7	사무실	브릭스레트	49.6	박해수	인천 중구 내동 7-26	
			작업장	브릭스레트	280.3			
			작업장	브릭스레트	58.3			
			창고	목조스레트	19.5			
			작업장	스레트	39.7			
			화장실	브릭스레트	1.8			
			사무실	브릭스레트	14.1			
			사무실	브릭스레트	9.0			
			작업장	브릭스레트	80.1			
			작업장	브릭스레트	53.2			
			작업장	브릭스레트	46.3			
			사무실	브릭스레트	10.9			
			작업장	브릭스레트	24.5			
			창고	목조스레트	14.1			
			사무실	브릭스레트	15.6			
			작업장	브릭스레트	125.0			
			창고	브릭스레트	47.5			
			사무실	브릭스레트	8.6			
			작업장	브릭스레트	64.2			
2	간석동	399-2	방	벽돌스레트	25.8	김영우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9	
			상가	벽돌스레트	71.0			
			부엌	브릭스레트	4.5			
			창고	브릭스레트	23.0			
			창고	브릭슬라브	12.4			
			화장실	브릭스레트	1.4			
			가추	목조스레트	9.9			
3	간석동	376-4	상가	벽돌스레트	67.5	이경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446-6	
			사무실	벽돌스레트	10.0			
			창고	브릭스레트	27.6			
4	간석동	376-1	작업장	목조판넬	185.8	권혁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6-1	
			사무실	목조스레트	31.4			
			창고(가옥)	목조함석	11.2			
			창고	목조판넬	3.3			
			창고	철파이프천막	21.8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4	간석동	376-1	주택	목조합판	42.0	권혁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6-1	
			창고	철골천막	53.3			
			주택	철파이프조	24.0			
			보일러실	목조스레트	6.9			
			건사	목조합판	33.6			
			화장실	목조합판	3.6			
			상가	벽돌스라브	49.0			
			주택	벽돌스라브	49.0			
			주택	브릭스레트	13.0			
			계단	콘크리트	4.0			
5	간석동	360-14	방	벽돌스라브	118.5	김종렬	인천 남동구 간석동 360	
			상가	벽돌스라브	70.4			
			상가	벽돌스라브	54.9			
			창고	브릭스레트	36.6			
			계단실	브릭스레트	3.4			
6	간석동	364-1	사무실	목조스레트	21.6	조병철	인천 남동구 만수4동 주공a, 202/902	
			세면장	목조스레트	12.0			
			휴게실	철파이프천막	23.4			
			화장실	목조합석	3.0			
			울타리	그물망, 천막	280.0			
7	간석동	360-14	방	벽돌스라브	23.1	김영태	인천 남동구 간석동 360	
			상가	벽돌스라브	61.0			
			부엌	벽돌스라브	16.7			
			방/다락	브릭스레트	37.4			
			보일러/화장실	브릭슬라브	5.0			
			창고	브릭스레트	21.9			
			화장실	브릭스레트	1.7			
			담장	벽돌, 블록조	22.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8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남동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실천계획과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범시민운동이 필요함에 따라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남동의제21의 추진 방향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0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목적, 남동의제21의 정의, 사업내용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0 협의회의 구성범위를 정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0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역할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 0 남동의제21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453-2430)

 -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0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0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계획 : 공청회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의제21” 이라 함은 남동구의 주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작성하는 분야별 실천계획과 행동지침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 함은 모든 개발은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다음세대와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제3조(사업)①협의회는 제1조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남동의제21의 작성과 시범실천운동
2. 남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3. 남동의제21에 관한 교육, 홍보, 주민참여행사 전개
4.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의제21추진기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유지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협의회는 구민, 기업, 행정이 협력하여 참여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의장단 : 구민과 기업을 대표하여 선출한 2인 및 남동구 부구청장

2. 당연직위원 : 공무원과 남동구의회 의원

3. 위촉직위원 : 주민·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남동의제21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자

제5조(기구)협의회는 그 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또한, 필요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 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총회)①총회는 공동의장단을 비롯한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에서는 남동의제21 작성과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결하며 의제작성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③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을 총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으로 구의 소관국장과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남동의제21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소요예산을 포함한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제8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남동의제21 추진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의장단에서 위촉한다. 관련 분야별 참여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작성·실천하고자 하는 남동의제21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남동의제21의 작성과 시범사업 및 실천운동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의결)협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지원등)①구청장은 “남동의제21”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②협회는 남동의제21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협회는 소요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협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협회 출범 이전에 남동의제21추진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3-6호

검사시약및재료구입전자수의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검사시약및재료 구입

나. 구입 품명, 규격 및 수량 : 총58종 불임 참조

2. 입찰방법 : 최저가 총액 전자 수의 입찰

3. 입찰등록마감일시 : 2003. 6. 11(수) 18:00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3. 6. 12(금) 10:00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입찰집행관PC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약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 의약품 유통 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6.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지역제한 : 인천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전자입찰서를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최저가로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통보 : 입찰일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납품일시 및 조건

가. 납품기한 : 당 보건소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납품장소 : 당 보건소

다. 납품조건 : 의약품 유효기간은 요청시로부터 2년이상

13.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추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기초금액은 일금이천사백팔십만칠천칠십원입니다.
-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보건소 보건행정팀(☎032-453-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6. 4.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경리관

○ 구입 품목, 규격, 수량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HBs Ag(Rapid Device)	100T	통	5	아산제약
2	HBs Ab(Rapid Device)	100T	통	10	아산제약
3	ALP	20mlx10	통	5	아산제약
4	GOT	20mlx10	통	5	아산제약
5	GPT	20mlx10	통	5	아산제약
6	T.Bilirubin	20mlx10	통	5	아산제약
7	D.Bilirubin	20mlx10	통	5	아산제약
8	Glucose	20mlx10	통	5	아산제약
9	TG	20mlx10	통	5	아산제약
10	Albumin	100mlx2	통	5	아산제약
11	T-Cholesterol	20mlx10	통	5	아산제약
12	Creatinin	110mlx2	통	5	아산제약
13	T.Protein	100mlx2	통	5	아산제약
14	HDL-Cholesterol(R1)	45mlx2	통	10	아산제약
15	HDL-Cholesterol(R2)	15mlx2	통	10	아산제약
16	Hemogluco stick	50T	통	30	Roche
17	RA	5ml	통	3	녹십자
18	Urine stick(GP2)	100T	통	12	영동제약
19	Urine stick(10SGL)	100T	통	10	영동제약
20	혈액형시약(Anti A)	10ml	통	10	아산제약
21	혈액형시약(Anti B)	10ml	통	10	아산제약
22	혈액형시약(Anti D)	10ml	통	10	아산제약
23	CBC Control serum	2ml	통	12	Celltac
24	CBC Diluent	18ℓ	통	16	Celltac
25	CBC Detergent	5ℓ	통	6	Celltac
26	CBC Hemolysing	500ml	통	3	Celltac
27	Chlamydia	25T	통	100	PBM
28	RPR	150T	통	5	BBL
29	G-Stain	500ml/4	통	10	영동제약
30	API 20E	25T	통	2	
31	Culturette	50T	통	20	BBL
32	S-S Agar	500g	병	1	MERCK
33	Na Cl	500g	병	1	
34	Staphylococcal broth	500g	병	1	MERCK
35	Baird parker Agar	500g	병	1	MERCK
36	CBC tube(EDTA)	100's	통	10	Celltac
37	혈청분리관	250's	통	20	
38	Syrin Tube	100's	통	20	보인메디칼
39	Lancet	200's	통	20	
40	Capillary Tube(Heparin)	100's	개	20	
41	피고셀	160g	개	20	
42	1회용 tube(10ml)	1,000's	통	12	
43	Immersion Oil	100ml	병	5	
44	면봉	100's	통	1	

45	무균채수병	2L/100's	통	1	
46	Poly glove	100's	통	50	
47	Disposable speculum	100's	통	20	국산
48	Methyl Alcohol	18ℓ	병	2	
49	Kimwipes	215mmx210mmx150's	통	50	유한킴벌리
50	부탄가스		개	60	
51	유한락스	500ml	병	30	
52	수세용장갑	대	개	10	
53	주방용 수세미		개	10	
54	Y-BAG(3호)	100장	통	5	
55	Y-BAG(4호)	100장	통	5	
56	Accutrand건전지	625A,MR9,1.5V	개	12	
57	Ice Box	중	개	1	
58	Candle jar	25x15cm	개	1	

